

2016년 8월 20일 시행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6. 8. 20.(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6. 8. 22.(월) 12:00 ~ 2016. 8. 24.(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6. 9. 1.(목)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 ③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경우 그 성질상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의 신분과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군종장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 ⑤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외국인과 난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④ 외국인에 대하여 자격제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3】 과태료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 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4】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 ③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혐의사실뿐 확증 없는 상태에서 불이익처분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 ⑤ 징계부가금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의 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수형자와 그 수형자의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6】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② 재정신청 기간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가출소·집행면제 등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법관이 아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소환된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구 특허법상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문 7】 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위원회가 A회사에 대해 내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보유주식 처분 명령 및 A회사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들에 대하여 B은행 주주인 청구인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② 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선발하고 10%만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충남 C고 입학전형요강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승인한 행위에 대하여 인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③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하여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가 공무담임권 및 교육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④ 검사가 정당의 당원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⑤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구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문 8】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②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 ④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⑤ 헌법상 평등원칙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입법자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9】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내지 지위의 보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포함된다.

【문10】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 ㉡ 감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
- ㉢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
- ㉣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
-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1】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며,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에는 적용될 수 없다.
- ④ 국가에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12】법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 ② 정부,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13】 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소위 '소극적 단결권'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논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고, 그 밖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는다.
- 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정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정의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14】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심사적대로서 적용된다.
- ㉢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 직장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장된다.
-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장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국가배상제도에에는 피해자구제기능, 손해분산기능 외에도 제재기능 및 위법행위 억제기능이 있다.
- 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처분상대방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문16】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국적 이탈이나 변경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②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들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③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문17】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 ③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8】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국가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부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권한 행사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19】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일일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기본적 윤곽만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과 규율대상의 복잡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 ④ 국민연금보험법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규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문20】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 ② 1952년 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를 규정하였다.
- ③ 1954년 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다.
- ④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국회단원제, 대통령 국회간선제를 규정하였다.
- ⑤ 1962년 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를 규정하였다.

【문21】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 ②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 ③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문2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 ②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 ③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
- ④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 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23】인신보호청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2007년에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법심사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형사소송절차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입법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④ 인신보호법 제15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입법목적에 가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신보호법 제15조 소정의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⑤ 인신보호법 제2조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에 준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에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 또는 여타의 행정상의 인신구속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24】대법원장은 국가의 중요기관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의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 중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 ② 국가인권위원회 11인의 위원 중 3인
- ③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 ④ 국민권익위원회 8인의 비상임위원 중 3인
- 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3인

【문25】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헌법재판소 사무에 속하는 사항
- ③ 군사법원의 재판에 속하는 사항
- ④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⑤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문26】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된다.
- ②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상의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③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된다.
- ④ 다만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하여 특별조치법상 다른 규정들도 모두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⑤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이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의·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27】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② 외국인
- ③ 사법인
- ④ 지방자치단체
- ⑤ 미등기 사단

【문28】 다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 ① 검찰총장
- ② 경찰청장
- ③ 국세청장
- ④ 감사원장
- ⑤ 국가정보원장

【문29】 다음 중 가장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사항은?

- ①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
- ② 계엄의 해제 요구
- ③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 ④ 대통령의 탄핵 소추
- 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재의결

【문30】 헌법 전문(前文)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국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가 담겨 있으며,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 ② 따라서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 법률이 이에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 ③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 ④ 이와 같이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도출되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현행 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하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사회정의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이다.

【문31】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없음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 ③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원자격상실결정이나 의원제명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 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의 경호권, 내부경찰권,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32】 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이 청원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 ③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청원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대상이다.
- ④ 국회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⑤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거부 의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문33】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관은 탄핵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⑤ 헌법은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70세, 그 밖의 법관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의 정년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관으로 하여금 정년까지의 재직 여부에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법관의 신분보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문34】 다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인권위원장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대법원장
- ㉣ 헌법재판소장
- ㉤ 감사원장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③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는 헌법 제10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2항, 취임선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전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 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퇴직 후에는 형사소추 등의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문36】 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 1960년 3차 개정 헌법(2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 ㉢ 1962년 5차 개정 헌법(3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였다.
- ㉣ 1972년 7차 개정 헌법(4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 1980년 8차 개정 헌법(5공화국 헌법)에서는 4공화국 헌법의 헌법재판제도에 별다른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나, 1987년 9차 개정 헌법(6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7】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며,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⑤ 감사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문38】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간접적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그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형법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9】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관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예비비의 지출
- ② 국채의 모집
- ③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④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 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

【문40】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재의요구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 ㉤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 1】 도급계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②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
- ③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하자보수비용은 도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때 또는 하자를 발견한 때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 또는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문 2】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고, 유치권 행사로서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3】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떠한 건물 신축이 그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甲이 언론사인 乙社の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침해당하여 그 기사 작성자인 乙社를 상대로 그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기사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乙社가 그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도로변 지역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은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일반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자 및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는 성명불상자인 채무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⑤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문 5】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진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부무효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6】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단체결정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이나 설립 후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족하고, 설립 자체에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도 결국 사원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면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을 구속한다.
- ③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고,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 이 때 각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한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인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매도청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문 7】 고용주인 甲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乙이 업무상 부주의로 운반하던 자재를 떨어뜨려 다른 근로자 丙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도 인정되어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며 그 과실비율은 甲 30%, 乙 70%로 인정되었다. 丙의 과실은 없고, 丙의 손해액은 1억 원으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그 채권으로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 丙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甲은 70%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 甲이 丙에게 위 손해액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이 甲에 대하여 잔액 4,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 ㉣ 甲이 배상사실을 乙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 乙이 선의로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만약 丙의 과실이 20% 인정되고 丙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甲은 6,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 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의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③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배각절차에 의하여 배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④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⑤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을 甲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 위 사안에서 甲이 계약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 또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 甲은 자기 소유 기계류와 공장에 대하여 乙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할 경우 甲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甲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자인 丙은행에 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乙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甲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은 질권자 丙에게 보험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은 위 돈 중 11억 원은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4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甲의 허위자료 제출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었다면 乙은 丙은행을 상대로 4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만약 ㉢ 사례에서 丙이 나머지 4억 원을 甲에게 돌려주었다더라도 乙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 甲이 계약 상대방인 乙 지시로 乙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甲·乙 사이의 계약관계가 실효되더라도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10】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②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조합계약상 이익분배에 관한 비율만 정하고 손실분배에 관한 비율은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실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④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만료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
- ⑤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그 조합은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문11】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2】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④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 ⑤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문13】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경매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없다.
- ③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사적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⑤ 경계확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고 제3의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

【문14】 금전채무불이행과 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 ㉡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사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자를 매달 받기로 하였는데, 1월이 경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된 후에 채권자 甲이 원본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 ㉢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발생을 의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발생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15】 (가)등기와 대장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 ㉢ 가등기는 원칙상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비로소 가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다.
-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나,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문16】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③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된다.
- ④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문17】 주물과 종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그 건물에 부속될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여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위 물건이 경매의 목적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이다.
-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 ④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므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승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⑤ 횃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횃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문18】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문1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일단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이행에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요약자는 자신과 수익자와의 관계인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 ②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계약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도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문2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망인의 형제인 甲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채무자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망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는 丙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이므로 甲에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통지한 이후 甲과 乙의 소송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丙의 인지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되어 진정한 상속인으로 판명된 경우 乙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 ②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또는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이의소송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집행법원의 가압류집행취소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한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였다면 이것은 진정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이다.
- ④ 양도인 B가 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D가 양수하여 대항력이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도인 B가 양수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양도인 B의 채권자 A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A가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채무자 C가 패소판결을 받고 A에게 변제한 경우에 C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 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

【문22】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단존속기간은 건물의 경우 견고한지 여부에 따라 30년 또는 15년, 공작물이나 수목의 경우 5년이다.
- ②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를 임대할 수는 없다.
- ③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민법에 지상권의 최장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2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선의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기초로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중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중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 ④ 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했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인 乙 회사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丁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4】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②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③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25】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를 상실한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26】 스마트폰 도매상을 하는 甲은 대리점 운영자인 乙에게 최신 스마트폰 100대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乙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 3. 6.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9. 4. 11.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9. 4. 11.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乙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1. 3. 6.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12. 4. 11.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12. 4. 11.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법원은 심리결과 甲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소송에서 甲이 소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라고 주장하고, 乙도 5년의 시효기간을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 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소송에서 위 소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다툼이 되었는데, 증거조사결과 시효기간 중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이러한 형사고소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7】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친생자추정과 관련하여 혼인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 그로 인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추가된 ‘처’에는 대상자의 법률상 父와 재혼한 처도 포함된다.
-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약 30년 전 피고의 모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확정판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포기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신청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乙, 丙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하여 상속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丙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丁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丙의 상속지분에 한하여는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과, 성년자녀 丙, 미성년자녀 丁이 있을 때,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 A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 乙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甲과 乙이 丙에 대한 상속채무에 관하여 甲이 3,000만 원, 乙이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다면 乙은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9】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 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 ③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A가 공동상속인 甲, 乙 2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총 재산 6억 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B, C에게 각각 4억 원, 1억 원을 유증한 경우에 甲은 B를 상대로 6,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따른 반환의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문30】 민법상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각 신용구매계약이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할부구매로 월 소득 범위를 넘지 아니하였다면,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 ㉤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1】 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3억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위 ①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 ③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 ④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⑤ 위 ④의 경우 물상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문32】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때 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③ 甲이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도 甲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을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문33】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丙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의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③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은 부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던 이상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⑤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문3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부동산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그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문35】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 점유자 甲이 1990. 6.부터 2014. 8.까지 X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왔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6. 환지예정지 지정(제자리 환지)이 있었고 2007. 6. X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점유자는 2014. 8. 현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 부지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 甲이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 ㉤ 乙은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토지를 1965. 5. 1.부터 점유하여 2006. 5.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A토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甲이 乙로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부분을 받은 다음 A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甲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문36】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이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자 乙과 그의 채권자 丙사이에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丙은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금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문37】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X 부동산 소유자 甲이 대리인인 乙을 통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乙을 통하여 甲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丙의 의사만 인정되면, 乙의 대리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 된다.
-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乙 스스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이자 부동산 매수인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丙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 ㉣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甲은 오피스텔을 준공 후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과 상의도 없이 위 분양업무에 관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이 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분양업무의 법률효과는 원칙상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乙을 대리하여 乙의 X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 甲은 X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 ㉥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丙이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은 아니고,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甲은 2015. 1. 1.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6. 1. 1.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은 2016. 1. 1.부터 10년 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
- ㉣ 위 ㉢ 사례에서 乙이 2016. 7. 30.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甲의 예약금반환채무는 위 반환청구가 있는 때 이행지체에 빠진다.
- ㉤ 집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소 변경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39】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 ③ C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A 소유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주택에 D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사안에서(다만 E는 없다고 가정함) D는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서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자인 중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문4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과 乙은 각자의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乙의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X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甲과 乙이 X토지를 1/2씩 공유하던 중 甲이 X토지의 1/3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甲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비추어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甲과 乙이 X토지를 지분 2/3, 1/3씩 각 공유하던 중 甲이 X토지 전부를 乙과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의 지분에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 甲과 乙이 X토지를 A·B토지로 협의분할하여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의 소유가 된 경우, 공평의 원칙상 丙의 저당권은 A토지에만 존속함이 원칙이다.
- ㉤ 甲, 乙, 丙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丁으로부터 X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세 사람의 소유관계는 공유이다.
- ㉥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6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문 1】 다음 중 일치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입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 ②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③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 ④ 은행장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⑤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가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문 2】 다음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진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사안 (사기죄)
- 나.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피고인의 8촌 혈족인 乙, 피고인의 부친인 丙을 기망하여 甲, 乙, 丙의 합유로登記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
- 다.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조한 차용증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한 사안 (사기미수죄)
- 라.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였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
- 마. 乙은 피고인의 삼촌인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乙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위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 (횡령죄)
-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제1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절도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부족하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보호자가 주치의에게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주치의가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여 그 환자가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주치의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

【문 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 ③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장물보관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5】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이므로 명의차용인은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
- 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다.
- 바.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가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 사.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 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 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 인신매매 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이른바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다.
- 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모두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나.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라.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마.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 바.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 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다.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마.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②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과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④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 ②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 ③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 ④ 판례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⑤ 판례는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문11】 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통설에 의함)

- ①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을 뜻하는 바,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신뢰의 원칙이란 과실범에서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문12】 장애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이종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 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파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3】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장래의 권리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 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 라.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마.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포함된다.
- 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국에 모여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죄를 음모·예비한 러시아인들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 ④ 대한민국에 체재(滞在)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한편 그와 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②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③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여부,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까지 불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으며, 그 내용까지 진실하다면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공용서류은닉죄에서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지만,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한다.

【문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나.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마.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나.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에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천장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에 이른 것이다.
- 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마.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스스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④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지만,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19】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 ③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 ④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⑤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는 준강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문21】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 ②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폭행의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문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다수의 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②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타 등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할 수 있다.

【문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나.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라.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마.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4】 다음 설명 중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사안
-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의 표현을 한 사안

① ㉠ ② ㉠, ㉡ ③ ㉢ ④ ㉢, ㉣ ⑤ 없음

【문25】 물수·주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③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추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⑤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 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문26】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에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 범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2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나.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다. 우리 형법은 무죄판결의 공시제도는 있으나, 면소판결의 공시제도는 없다.
- 라.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되,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9】 내란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 ② 내란죄는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③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④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 ⑤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3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너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③ 강간범인이 부너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④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⑤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한 경우는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문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벤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나중에 트러스가 붕괴된 것을 일반교통방해에서의 손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어 교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나 교량공사 현장감독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문32】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④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33】 문서 및 통화에 관한 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고,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④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 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문3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관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 나. 관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 라.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5】 다음 중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A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 나. B가 강도치상 범행 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공중전화로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당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중전화 앞에서 B를 발견하고 B에게 범행 여부를 묻자 B는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으며, B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한 경우
- 다. C가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자수의사를 표시하고 함께 만날 시간을 정하였으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찾아온 경찰관이 약속시간보다 일찍 경찰서를 가자는 요청에 순순히 응하여 검거되었고 뒤이어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한 경우
- 라.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추궁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D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소추를 구한 경우
- 마. E가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 경우
- 바. F가 대마초를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세관 소속 공무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F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므로, 위 세관 소속 공무원이 F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F가 담배라고 대답하였다가, 이에 대마초인 것을 직감한 위 세관 소속 공무원이 다시 대마초냐고 되물자, F가 그 때서야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6】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므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③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문37】 형법상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별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별할 수 있다.
- 라.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이라면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마.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바.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A가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동료 청원경찰인 B에게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부탁한 다음, B가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보니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출장복명서를 완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⑤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비록 그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문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뢰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나.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다.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정할 수 없다.
- 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과 달리 교사범 또는 중범은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없다.
- 마.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중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정하여야 한다.
- 바.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마.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으나,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바.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16년 8월 20일 시행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6. 8. 20.(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6. 8. 22.(월) 12:00 ~ 2016. 8. 24.(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6. 9. 1.(목)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과태료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 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2】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 ③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혐의사실뿐 확증 없는 상태에서 불이익처분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 ⑤ 징계부가금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의 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3】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 ③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경우 그 성질상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의 신분과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군종장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 ⑤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 4】 외국인과 난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④ 외국인에 대하여 자격제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5】 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위원회가 A회사에 대해 내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보유주식 처분 명령 및 A회사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들에 대하여 B은행 주주인 청구인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② 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선발하고 10%만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충남 C고 입학전형요강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승인한 행위에 대하여 인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③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하여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가 공무담임권 및 교육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④ 검사가 정당의 당원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⑤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구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문 6】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②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 ④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⑤ 헌법상 평등원칙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입법자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수형자와 그 수형자의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8】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가출소·집행면제 등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중전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법관이 아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소환된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구 특허법상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문 9】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며,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 ④ 국가에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10】 법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 ② 정부,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내지 지위의 보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포함된다.

【문1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 ㉡ 감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
- ㉢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면퇴직하도록 한 것
- ㉣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
-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3】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장된다.
-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국가배상제도에는 피해자구제기능, 손해분산기능 외에도 제재기능 및 위법행위 억제기능이 있다.
- 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처분상대방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문14】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국적 이탈이나 변경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②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들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③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문15】 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소위 ‘소극적 단결권’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논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고, 그 밖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는다.
- 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16】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심사척도로서 적용된다.
- ㉢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 직장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7】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일일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기본적 윤곽만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과 규율대상의 복잡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 ④ 국민연금보험법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규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융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문18】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 ② 1952년 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를 규정하였다.
- ③ 1954년 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다.
- ④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국회단원제, 대통령 국회간선제를 규정하였다.
- ⑤ 1962년 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를 규정하였다.

【문19】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 ③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20】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국가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부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권한 행사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21】인신보호청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2007년에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법심사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는 형사소송절차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입법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④ 인신보호법 제15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입법목적에 가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신보호법 제15조 소정의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⑤ 인신보호법 제2조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에 준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에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 또는 여타의 행정상의 인신구속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22】대법원장은 국가의 중요기관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의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 중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 ② 국가인권위원회 11인의 위원 중 3인
- ③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 ④ 국민권익위원회 8인의 비상임위원 중 3인
- 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3인

【문23】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헌법재판소 사무에 속하는 사항
- ③ 군사법원의 재판에 속하는 사항
- ④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⑤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문24】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 ②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 ③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문25】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 ②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 ③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
- ④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 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26】헌법 전문(前文)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전문의 전문에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가 담겨 있으며,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 ② 따라서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 법률이 이에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 ③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 ④ 이와 같이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도출되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헌법 전문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하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이다.

【문27】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없음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 ③ 헌법 전문은 국회의 의원자격상실결정이나 의원제명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 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의 경호권, 내부경찰권,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28】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된다.
- ②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상의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③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된다.
- ④ 다만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하여 특별조치법상 다른 규정들도 모두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⑤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이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29】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② 외국인
- ③ 사법인
- ④ 지방자치단체
- ⑤ 미등기 사단

【문30】다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 ① 검찰총장
- ② 경찰청장
- ③ 국세청장
- ④ 감사원장
- ⑤ 국가정보원장

【문31】다음 중 가장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사항은?

- ①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
- ② 계엄의 해제 요구
- ③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 ④ 대통령의 탄핵 소추
- 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재의결

【문32】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③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는 헌법 제10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2항, 취임선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전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 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퇴직 후에는 형사소추 등의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문33】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 1960년 3차 개정 헌법(2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 ㉢ 1962년 5차 개정 헌법(3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였다.
- ㉣ 1972년 7차 개정 헌법(4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 1980년 8차 개정 헌법(5공화국 헌법)에서는 4공화국 헌법의 헌법재판제도에 별다른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나, 1987년 9차 개정 헌법(6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4】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며,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⑤ 감사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문35】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이 청원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 ③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청원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대상이다.
- ④ 국회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⑤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거부·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문36】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관은 탄핵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⑤ 헌법은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70세, 그 밖의 법관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의 정년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관으로 하여금 정년까지의 재직 여부에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법관의 신분보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문37】다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인권위원장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대법원장
- ㉣ 헌법재판소장
- ㉤ 감사원장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재의요구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 ㉤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39】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간접적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그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형법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40】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관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예비비의 지출
- ② 국채의 모집
- ③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④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 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

【문 1】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떠한 건물 신축이 그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甲이 언론사인 乙社の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침해당하여 그 기사 작성자인 乙社를 상대로 그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기사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乙社가 그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도로변 지역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일반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자 및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는 성명불상자인 채무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⑤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문 3】 도급계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②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
- ③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하자보수비용은 도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때 또는 하자를 발견한 때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 또는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문 4】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고, 유치권 행사로서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5】 고용주인 甲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乙이 업무상 부주의로 운반하던 자재를 떨어뜨려 다른 근로자 丙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도 인정되어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며 그 과실비율은 甲 30%, 乙 70%로 인정되었다. 丙의 과실은 없고, 丙의 손해액은 1억 원으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그 채권으로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 丙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甲은 70%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 甲이 丙에게 위 손해액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이 甲에 대하여 잔액 4,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 ㉣ 甲이 배상사실을 乙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 乙이 선의로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만약 丙의 과실이 20% 인정되고 丙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甲은 6,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의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③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장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장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④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⑤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 7】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부무효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단체결성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이나 설립 후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족하고, 설립 자체에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도 결국 사원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면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을 구속한다.
- ③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고,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 이 때 각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한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인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매도청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문 9】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0】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④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 ⑤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을 甲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 위 사안에서 甲이 계약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 또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 甲은 자기 소유 기계류와 공장에 대하여 乙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할 경우 甲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甲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자인 丙은행에 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乙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甲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은 질권자 丙에게 보험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은 위 돈 중 11억 원은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4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甲의 허위자료 제출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었다면 乙은 丙은행을 상대로 4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만약 ㉢ 사례에서 丙이 나머지 4억 원을 甲에게 돌려주었다라도 乙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 甲이 계약 상대방인 乙 지시로 乙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甲·乙 사이의 계약관계가 실효되었다도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12】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②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조합계약상 이익분배에 관한 비율만 정하고 손실분배에 관한 비율은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실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④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만료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
- ⑤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그 조합은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문13】 (가)등기와 대장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 ㉢ 가등기는 원칙상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비로소 가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다.
-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나,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문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③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된다.
- ④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문15】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지면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경매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없다.
- ③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면,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사적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⑤ 경계확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고 제3의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

【문16】 금전채무불이행과 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 ㉡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사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자를 매달 받기로 하였는데, 1월이 경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된 후에 채권자 甲이 원본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 ㉢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발생을 의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발생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도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문1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일단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이행에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서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요약자는 자신과 수익자와의 관계인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18】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 ②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계약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도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문19】 주물과 종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그 건물에 부속될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여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위 물건이 경매의 목적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이다.
-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 ④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므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⑤ 횃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횃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문20】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채권추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문2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선의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기초로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중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중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 ④ 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했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인 乙 회사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丁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2】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②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③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2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망인의 형제인 甲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채무자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망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는 丙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이므로 甲에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통지한 이후 甲과 乙의 소송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丙의 인지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되어 진정한 상속인으로 판명된 경우 乙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 ②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또는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이의소송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집행법원의 가압류집행취소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한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였다면 이것은 진정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이다.
- ④ 양도인 B가 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D가 양수하여 대항력이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도인 B가 양수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양도인 B의 채권자 A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A가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채무자 C가 패소판결을 받고 A에게 변제한 경우에 C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 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

【문24】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단존속기간은 건물의 경우 견고한지 여부에 따라 30년 또는 15년, 공작물이나 수목의 경우 5년이다.
- ②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를 임대할 수는 없다.
- ③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민법에 지상권의 최장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25】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와 친생부인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친생자추정과 관련하여 혼인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 그로 인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가 아니라 인지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추가된 ‘처’에는 대상자의 법률상 父와 재혼한 처도 포함된다.
-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약 30년 전 피고의 모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확정판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포기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신청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乙, 丙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하여 상속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丙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丁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丙의 상속지분에 한하여는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과, 성년자녀 丙, 미성년자녀 丁이 있을 때,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 A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 乙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甲과 乙이 丙에 대한 상속채무에 관하여 甲이 3,000만 원, 乙이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다면 乙은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7】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를 상실한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28】 스마트폰 도매상을 하는 甲은 대리점 운영자인 乙에게 최신 스마트폰 100대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乙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 3. 6.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9. 4. 11.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9. 4. 11.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乙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1. 3. 6.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12. 4. 11.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12. 4. 11.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법원은 심리결과 甲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소송에서 甲이 소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라고 주장하고, 乙도 5년의 시효기간을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 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소송에서 위 소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다툼이 되었는데, 증거조사결과 시효기간 중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이러한 형사고소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9】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재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저당권이, Y에는 乙의 재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3억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위 ①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 ③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 ④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⑤ 위 ④의 경우 물상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문30】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때 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③ 甲이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도 甲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을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문31】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 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 ③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A가 공동상속인 甲, 乙 2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총 재산 6억 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B, C에게 각각 4억 원, 1억 원을 유증한 경우에 甲은 B를 상대로 6,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따른 반환의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문32】민법상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각 신용구매계약이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할부구매로 월 소득 범위를 넘지 아니하였다면,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 ㉤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33】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 점유자 甲이 1990. 6.부터 2014. 8.까지 X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왔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6. 환지예정지 지정(제자리 환지)이 있었고 2007. 6. X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점유자는 2014. 8. 현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 부지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 甲이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 ㉤ 乙은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토지를 1965. 5. 1.부터 점유하여 2006. 5.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A토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甲이 乙로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부분을 받은 다음 A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甲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문34】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丙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의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③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은 부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던 이상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⑤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문3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부동산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그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문36】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X 부동산 소유자 甲이 대리인인 乙을 통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乙을 통하여 甲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丙의 의사만 인정되면, 乙의 대리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 된다.
-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乙 스스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이자 부동산 매수인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丙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 ㉣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甲은 오피스텔을 준공 후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과 상의도 없이 위 분양업무에 관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이 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분양업무의 법률효과는 원칙상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乙을 대리하여 乙의 X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 甲은 X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 ㉥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丙이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이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자 乙과 그의 채권자 丙사이에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丙은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금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문38】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 ③ C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A 소유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주택에 D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사안에서(다만 E는 없다고 가정함) D는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서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문39】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은 아니고,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甲은 2015. 1. 1.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6. 1. 1.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은 2016. 1. 1.부터 10년 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
- ㉣ 위 ㉢ 사례에서 乙이 2016. 7. 30.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甲의 예약금반환채무는 위 반환청구가 있는 때 이행지체에 빠진다.
- ㉤ 집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소 변경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4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과 乙은 각자의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乙의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X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甲과 乙이 X토지를 1/2씩 공유하던 중 甲이 X토지의 1/3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甲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비추어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甲과 乙이 X토지를 지분 2/3, 1/3씩 각 공유하던 중 甲이 X토지 전부를 乙과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의 지분에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 甲과 乙이 X토지를 A·B토지로 협의분할하여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의 소유가 된 경우, 공평의 원칙상 丙의 저당권은 A토지에만 존속함이 원칙이다.
- ㉤ 甲, 乙, 丙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丁으로부터 X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세 사람의 소유관계는 공유이다.
- ㉥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6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문 1】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부족하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보호자가 주치의에게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주치의가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여 그 환자가 집에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주치의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범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

【문 2】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 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 ③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장물보관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3】 다음 중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입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 ②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③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 ④ 은행장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함께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⑤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상을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가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문 4】 다음 중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사안 (사기죄)
- 나.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피고인의 8촌 혈족인 乙, 피고인의 부친인 丙을 기망하여 甲, 乙, 丙의 합유로登記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
- 다.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조한 차용증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한 사안 (사기미수죄)
- 라.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였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
- 마. 乙은 피고인의 삼촌인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乙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위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 (횡령죄)
-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제1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절도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5】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나.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라.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마.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 바.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나. 위협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다.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의 경우에 그 행위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마.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이므로 명의차용인은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
- 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다.
- 바.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가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 사.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 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 인신매매 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이른바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다.
- 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모두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9】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통설에 의함)

- ①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을 뜻하는 바,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신뢰의 원칙이란 과실범에서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문10】장에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이종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 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②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과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④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 ②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 ③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 ④ 판례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⑤ 판례는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②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③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여부,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까지 불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으며, 그 내용까지 진실하다면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공용서류은닉죄에서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지만,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한다.

【문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나.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마.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5】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장래의 권리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 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 라.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마.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포함된다.
- 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국에 모여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죄를 음모·예비한 러시아인들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 ④ 대한민국에 체재(滞在)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한편 그와 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문17】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 ③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 ④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⑤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는 준강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이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문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나.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의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천장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에 이른 것이다.
- 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마.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스스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지만,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나. 중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라.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마.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2】 다음 설명 중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사안
-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의 표현을 한 사안

- ① ㉠ ② ㉠, ㉡ ③ ㉢ ④ ㉢, ㉣ ⑤ 없음

【문23】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 ②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폭행의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문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다수의 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②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타 등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할 수 있다.

【문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 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함 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 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 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범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 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나.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다. 우리 형법은 무죄판결의 공시제도는 있으나, 면소판 결의 공시제도는 없다.
- 라.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되,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 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7】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 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 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③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 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 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④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 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입수한 마 약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추정금 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⑤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 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 부터 각각 추정할 수 있다.

【문28】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에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 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 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 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 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 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 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 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 죄가 성립한다.

【문2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③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④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⑤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한 경우는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문30】 내란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 ② 내란죄는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③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④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 ⑤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31】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④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나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의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벤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나중에 트러스가 붕괴된 것을 일반교통방해에서의 손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어 교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나 교량공사 현장감독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문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 나.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 라.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4】 문서 및 통화에 관한 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다는 하더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고,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피고인)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④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 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서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문35】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므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③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문36】다음 중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A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 나. B가 강도치상 범행 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공중전화로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당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중전화 앞에서 B를 발견하고 B에게 범행 여부를 묻자 B는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으며, B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한 경우
- 다. C가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자수의사를 표시하고 함께 만날 시간을 정하였으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찾아온 경찰관이 약속시간보다 일찍 경찰서를 가자는 요청에 순순히 응하여 검거되었고 뒤이어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한 경우
- 라.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추궁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D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소추를 구한 경우
- 마. E가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 경우
- 바. F가 대마초를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세관 소속 공무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F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므로, 위 세관 소속 공무원이 F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F가 담배라고 대답하였다가, 이에 대마초인 것을 직감한 위 세관 소속 공무원이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F가 그 때서야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A가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동료 청원경찰인 B에게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부탁한 다음, B가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보니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출장복명서를 완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⑤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비록 그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문38】 형법상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별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별할 수 있다.
- 라.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이라면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마.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바.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증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증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마.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으나,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바.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뢰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나.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다.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정할 수 없다.
- 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과 달리 교사범 또는 중범은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없다.
- 마.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중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정하여야 한다.
- 바. 배임수증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증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증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